

2022년도 일반직(약무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재공고

1 관련 계획 및 근거: 인사규정 제20조(신규 채용방법) 및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2 모집 분야(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 직종	모집부문 (직무)	채용(예정) 직 급	근무 병원	모집 인원	응 시 자 격
약무직	약사	약무4급	양산	22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3년 약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

3 모집부문별 전형단계 및 배점기준

응시직종	모집부문(직무)	1차	2차		계	비고
		서류전형	실무(실기)시험	면접시험		
약무직	약사	적격여부	60점	40점	100점	

※ 서류전형(적격여부): 응시자격 중심의 요건 심사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 자격이 부여됨.

※ 양산병원의 경우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진행예정이며, 대상자가 해당 검사 미완료시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참여 불가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라. 전형일정 참고(접수 마감일 17:00까지 마감)

나. 응시원서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인재채용 접속 <https://pnyuh.recruiter.co.kr>

다.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응시자격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하므로 모집분야의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 바람.
- 2)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연령), 출신학교명(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신체적 조건(키·체중 등), 재산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3)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설명서, **서류적격여부의 기준이 되는 지원서 작성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내용 미준수, 필수응시자격(면허 및 자격사항 등) 미입력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등은 불합격 처리함.**
- 4) **모집 직종에 따른 복수지원 및 본원과 양산병원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함.**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6) 응시원서 입력 완료후 접수결과(입력완료후 접수완료 화면, 지원자의 이메일 확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마지막 날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접수 하여야 함.

라.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023.01.13.(금)~01.27.(금) 17:00까지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알리오 게시판 공고 -나라일터 공고
1차	서류적격확인	2023.01.30.(월)~01.31.(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2.02.(목)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제출 ※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	온라인 인성검사	2023.02.03.(금)~02.06.(월)	- 인성검사 미완료시 면접시험 참여 불가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2023.02.08.(수)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02.13.(월)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2023.02.13.(월)~02.14.(화)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서류적격확인	2023.02.15.(수)	-제출서류 적격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2023.02.20.(월)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최종 합격자 서류제출		2022.02.20.(월)~02.21.(화)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 ※ 공지 및 공고 사항은 반드시 지원한 병원(양산)의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람.
- ※ 상기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연락을 취함.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 온라인 인성검사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대상자가 인성검사를 기한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참여 불가함.**

5 제출서류

제출기일	제 출 서 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에 입학년도 및 졸업년도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표기가 없는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 중 경력사항을 기재한 모집부문(직무)에 한하여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후 해당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기 바람.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남자인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 • 통장사본 (CMA 계좌 제외) 1부. ※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이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의 보훈대상이나 장애 항목에 체크한 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후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항목에 체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하지 않음.

※ 서류제출시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도록 함. 해당서류는 가점부여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고 심사위원 등에는 제공되지 않음.

나. 편입학의 경우 편입전 학교의 졸업(학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학사졸업증명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이력이 없거나, 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의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점 최소 1개월 전에 수검 필요**(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검진한 결과서만 인정)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1년 이내 검진한 결과서)가 있는 경우 대체하여 제출 가능함.

라. 제출서류는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미제출한 경우, 서류미비 및 온라인지원 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서류제출시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도록 함. 제출된 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고 심사위원 등에는 제공되지 않음.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간(반환청구기간)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붙임 서식)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함. 단, 채용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서류와 응시자가 본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바.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 교육사항의 이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 등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6 우대사항

대 상	관련근거	주 요 내 용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 경증 5%, 중증 10%

가.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하며 취득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하지 아니한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최종 선발예정인원이 최소 4인 이상이어야 가점부여 가능). 다만, 응시인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각 전형(서류, 필기, 실기 및 면접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라.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가점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7

합격자 결정

- 가. 서류전형의 합격자 사정은 응시자격 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자로 결정한다.
- ※ 단, 자기소개서 작성시 **특정단어·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거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거나, 항목별 답변을 중복으로 작성한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
- 나.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온라인 인성검사 대상자가 기한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참여 불가함.**
- 다. 면접시험 취득 총점이 60점 이하일 때는 불합격으로 하며, 면접 취득총점의 계산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평정한 면접위원의 면접시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산정한다.(단, 면접시험과 실무평가의 총 합계가 60점 이하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 라. 면접위원이 3명 이하일 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 마.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는 ① 실무(실기)시험점수 우수자, ② 면접시험점수 우수자, ③ 면접 총 합산점수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 바. 선발인원 20% 범위내내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및 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사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사. 2023년 면허취득 예정자(약무직)의 경우 당해년도 면허증 미취득시 합격을 취소한다.
- 아.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8

합격자 임용

- 가. 최종합격자는 채용순위에 따라 정원(T/O) 범위내에서 정규직으로 임용 예정이며, 개인마다 임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
- 나. 최종합격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함. 단 수습기간 중 임용취소사유 발생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최종합격자는 직종에 따라 2023년부터 순차적 임용 예정.
- 라. 최종합격자는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마.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제외)는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임용대기기간은 2년임. <인사규정 제21조(채용후보자 명부)>

9

기타 사항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병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삭제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나. 남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함.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는 가능함.
- 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실시 전,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과 생년월일을 기한(등록기한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응시 불가함.
- 라.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여권만 인정)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사진 등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응시자는 결시(불합격)처리함.
- 마.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책임자가 없을시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될 수 있음.
- 바.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사.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아.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홈페이지 공고함.
- 자. 병원 필요시 본원(부산, 한방병원-양산소재)과 분원(양산) 병원 간 전보(인사이동)될 수 있으며, 인사관리상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차. 채용 불합격자 중 이의신청이 있는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력개발팀으로 제출하기 바람.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 인력개발팀(☎ 055-360-1342~4)으로 문의 바람.

2023. 1. 13.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